縣職員宿舍 末次단지 자치회 會則

(명칭)

제1조 본회는 현직원숙사 末次단지 자치회로 칭한다.

(목적)

제2조 본회는 단지에서 자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하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제3조 본회의 회원은 佐賀市(사가시) 本庄町 末次직원숙사의 입주자로 구성된다.

2 회원은 회칙의 정해진 바에 따라 이것을 엄수,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

(사업)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숙사의 유지, 관리에 관한 일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레크레이션등에 관한 일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회의)

제5조 본회에서 임원회 및 총회를 연다.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임원의 과반수 출석을 가지고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계획, 예정 및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의 ⅔ 이상의 신임에 따라 이것을 결정한다.

3 총회는 년1회 이상 회장이 소집, 자치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4 회장은 임원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임원)

제6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부회계 1명 간사(청소) 1명

간사(체육) 1명 회계감사 2명

(임원의 임무)

제7조 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여 會務를 총리함과 함께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락을 취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에게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원 상호의 연계와 사업의 추진을 담당한다.

4 회계는 본회의 회계 및 도든 경비의 集金사무를 담당한다.

5 회계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임기, 선출방법 등)

제8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임은 가능하다.

2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의 추천에 따라 이것을 신속하게 보충,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선출은 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모집, 회원의 ⅔ 이상의 신임에 따라 결정한다. 정원을 초과하는 입후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투표에 따라 상위특표자를 가지고 신임을 판단한다.

4 임원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 회원의 ⅔이상의 신임이 있으면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직책을 수행해야만 한다.

5 임원회에서의 후보자 선정에 있어 임원 경험자를 제외한 회원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기로 한다.

6 투표는 各戶 1표씩 한다.

7 임원에게는 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다.

(顧問)

제9조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임원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 위촉기간은 해당년도내로 한다.

(반장 및 月番)

제10조 본회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동의 각단계마다 반(8호)를 편성, 반에는 반장 및 월번을 둔다.

2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반의 총책임적인 역할을 한다.

3 월번은 자치회비 및 입회금집금등의 책임자로 한다.

4 월번은 각반에서 의논하여 정하지만 원칙적으로는 3개월 교대의 윤번제로 하며, 본회의 운영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경비)

제11조 회원은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라 회비 및 부담금을 납입해야만 한다.

2 입회에 있어 별도로 정해진 입회금을 납입해야만 한다.

3 회의 운영에는 회비, 부담금, 기부금등으로 충당한다.

(회계보고)

제12조 회계는 본회의 수지를 항상 파악, 경리를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

2 회계보고는 연도 종료후, 신속하게 수지결산서를 작성, 감독결과와 함께 보고해야만 한다.

(회계연도)

제1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한다.

(회칙의 개폐)

제14조 본회칙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폐할 수 있다.

(기타)

제15조 기타 자치활동에 관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회운영요망」으로 정하기로 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1970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의 시행일까지 납입된 현직원숙사말차단지공통요금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이어가기로 한다.

자치회운영요망

현직원숙사末次단지자치회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정한다.

1 회비

회비는 1호당 월액 2,000엔으로 한다. 단 15일 미만의 중도입주자는 그 달에 한정하여 1,000엔으로 한다.

2 입회금

신규입주자는 대해서는 입회금으로 2,000엔을 별도납입한다.

3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회의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기로 한다.

(1) 공통부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1 揚水펌프, 외등, 계단등의 전기요금

2 정화조의 수도료, 소독약요금, 청소비

3 기타, 전구교환에 필요한 경비등

(2) 지역활동부담, 협찬비

1 공민관활동운영비, 소방활동등에 대한 부담금

2 불우이웃돕기, 나무가꾸기 모금, 신사헌금비등의 협찬비

3 기타 쓰레기처리수수료등

(3) 자치회활동촉진에 관한 경비

1 전원총소시 간식비

2 임원회 및 총회등의 회의비

3 임원위로비

4 기타

4 반장 및 월번에 관한 것

(1) 반의 총책임적인 역할로서의 반장은 항상 반의 실태를 파악, 본회의 임원 및 관리인과의 연락을 담당할 것

(2) 회비 및 입회금의 집금은 월번의 임무로 회계의 지시에 따라 각반의 총

책임적인 역할을 할 것

(3) 정해진 기일까지 집금할 수 없는 미집금이 있으면 일시로 立替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회계까지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청소당번은 일주일마다 당번제로서, 쓰레기수집 당일의 청소은 반드시 실행할 것, 단 어쩔 수 없는 사정등으로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

(5) 월번교대에 대해서는 월번을 나타내는 「木札 」등을 후임자에게 전달,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5 投下筒에 대해서는

投下筒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6 「환경정비의 날」설정에 대해서는

(1) 년간 3회 정도를 전원에게 실행하는 환경정비의 날로, 각호 한명 이상씩 반드시 참가하기로 한다.

(2) 당일 불참석한 경우, 벌금으로 2,000엔(1戶)을 징수한다.

7 자가용차의 주차와 그 취급에 대해서

(1)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所定의 장소에 정리해 둘 것

(2)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항상 배려, 그 중에서도 심야의 운전, 겨울기간 동안의 운전연습에 특히 주의할 것

8 신규입주자에 대한 요망

(1)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전거주자의 후임으로서 그 책임을 확실히 수행할 것

(2) 장기간 부재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장에게 연락해 둘 것

입주의 안내
1998년 4월
末次현직원숙사자치회

1 자치회비에 대해서
자치회비 월액 2,000엔
자치회입회금 2,000엔

자치회비는 3개월분을 미리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금일 4~6월분 4월 급료일의 다음날
7~9월분 7월 급료일의 다음날
10~12월분 10월 급료일의 다음날
1~3월분 1월 급료일의 다음날

* 4월의 집금일은 입주, 퇴거의 관계로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치회비는 각층마다 월번을 하시는 분(3개월 교대)이 집금, 회계(금년도는 南棟 526호실의 고바야시씨)께서 징수해 주십시오.
새롭게 입주하시는 분으로 집금일에 집금하시지 않는 분은 자치회입회금 2,000엔으로 자치회비(입주한 달 15일까지 입주한 경우는 2,000엔. 16일 이후 입주한 경우 1,000엔)를 회계께서 징수해 주십시오.
(주) 자치회비는 정비 및 共投費(계단의 전기요금, 정화조, 저수조의 청소비, 대청소시에는 쓰레기 처리요금 등)에 사용합니다.

2 쓰레기 내놓는 방법에 대하여
불에 타는 쓰레기(부엌쓰레기등)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 시의 쓰레기
자원물(병, 캔류) 매월 제 1, 3 목요일 수집
페트병 매월 제 1, 3목요일 소다지참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유리등) 매월 제2,4 목요일 照
플라스틱계 쓰레기
유해쓰레기
(주) 부엌쓰레기 ・나무를 잘라 비닐주머니에 넣어 봉해 주십시오
・개나 고양이를 쓰레기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수집일 당일 아침 일찍 쓰레기를 내놓도록 하십시오
불연물류 ・전날밤 이후에 내 주십시오

일찍부터 내놓으면 北棟 쓰레기처리장이 부엌쓰레기처리장과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놀고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부피가 큰 쓰레기: 이사를 했을 때 부피가 큰 쓰레기(가스렌지, 급유기, 텔레비젼)는 각자가 처리해 주십시오.

※투하통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3 쓰레기처리장의 청소당번에 대하여

① 쓰레기처리장의 청소당번은 일주일마다(화요일, 금요일)이며 부엌쓰레기 수집후, 물청소를 해 주십시오.

② 北棟에 주거하시는 분에게는 북측의 쓰레기처리장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페트병,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자원물 수집후의 청소와 북동 주위의 쓰레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③南棟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남측의 쓰레기처리장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원측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 남동 주위의 쓰레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④당일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은 토,일요일이나 야간이라도 상관없으므로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부재시의 경우에는 순번을 바꾸어서 당번이 부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⑤수도(남동쓰레기 처리장)의 잠굼 열쇠는 청소당번 명찰과 함께 반환해서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의 사용은 공공 사용에 한정하므로 세차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4 기타

①차에는 室번호, 전화번호, 씨명을 적은 주차카드를 밖에서 보이도록 놓아 주십시오. 방문객의 경우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室번호등을 표시해 주십시오. 주차카드는 자치회장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회장집에 연락해 주십시오.

②자치회의 집금일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늦으면 월번이나 회계를 맡으신 분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③화장실 청소는 화장실용 세게를 사용하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만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제를 사용하면 정화조의 미생물이 죽는다고 합니다.)

④계단의 전기는 반드시 消燈해 주십시오. 전구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각반

의 임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⑤자치회의 행사에는 참석해 주십시오.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998년 10월 19일
各位
자치회장　山田

末次현직원숙사자치회총회의 개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세대 1명씩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는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결석하신 분께서는 1998년10월23일(금)까지는 위임장을 각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記

1 일시 1998년 10월 24일(토) 오후 8시~
2 장소 자치회집회소(本庄직원숙사 부지내)
3 의원 「本庄직원숙사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별지참조)
4 연락사항
　1)금후의 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2)제3회 불베기작업 실시에 대하여
　3)자치회비에 대하여
　4)기타
5 기타
　자치회 총회에 결석하신 세대로 총회 개최까지 위임장 제출이 없을 경우는 의제에 대하여 회장에게 一任할 것으로 됩니다.

의제 「 本庄직원숙사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의 설명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웃의 本庄직원숙사도 9월에는 거의 모든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어 현재 약 50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本庄직원숙사는 주차장이 각세대 1대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계신 세대는 나머지 한 대를 부지내의 빈 공간에 주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대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빈 공간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급히 민간의 임대주차장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本庄숙사의 회장으로부터 末次숙사의 주차장을 일부 이용할 수 있었

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末次, 本庄 양숙사에서 각각의 자치회로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및 2000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末次숙사의 개축공사가 완료되면 자치회도 통합이 되며 앞으로 상호간에 협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축공사 완료후는 末次숙사도 각세대 한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末次숙사로서는 下記사항을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本庄숙사의 자동차 일부를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건을 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하고 싶습니다.

(조건)
1 本庄숙사 입주자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末次숙사 입주자의 자동차 주차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대수로 한다.
2 本庄숙사 입주자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末次숙사의 1층 입주세대 앞, 末次숙사의 입주자 주차장소 이외의 장소등에서 末次숙사 자치회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3 本庄숙사 입주자가 주차할 수 있는 기간은 1999년3월31일까지로 한다.
4 本庄숙사 입주자가 주차하는 자동차에는 末次숙사 자치회장이 발행하는 주차카드를 외측에서 보이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기로 한다.
5 주차카드에는 戶번호, 씨명, 전화번호를 며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6 末次숙사자치회장은 上記의 조건을 엄수하지 않는 등,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本庄숙사 입주자의 주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